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간제근로자(임원비서) 채용 공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9. 12.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우리 원의 직원 채용 주요사항 >
○ (블라인드 채용) 제출되는 서류는 자격요건, 우대 요건 등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전 과정이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Ⅰ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고용형태/직종(분야)	직무내용	인원	근무지 배치
기간제근로제/임원비서	- 임원비서 업무	1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NCS기반 직무설명자료[별첨1] 참조

Ⅱ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흥원 정년연령(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응시연령기준일: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임용 2020년 1월 13일(월) 예정)
결격사유	<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table>
<tr><td></td><td>○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td></tr>
<tr><td>우대사항</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고</th></tr>
<tr><td>취업지원 대상자</td><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td>각 전형별 가점부여(5~10점)</td></tr>
<tr><td>장애인</td><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td><td>각 전형별 가점부여(5점)</td></tr>
<tr><td>경력단절여성</td><td>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td><td rowspan="3">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3점)</td></tr>
<tr><td>지역인재</td><td>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지역인재 해당 기준은 [별첨2] 참조</td></tr>
<tr><td>고졸</td><td>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대학 중퇴자 포함), 단, 대학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함</td></tr>
</table>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은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스캔본(앞, 뒷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말함
① 여성으로서 ②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③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개에 대해서만 가산점 부여
</td></tr>
</table>

Ⅲ 근무조건

▣ 근무조건

구 분	근로조건	보 수	주근무지
기간제근로자 (임원비서)	○ 계약기간 : 2020.01.13.(월)～2020.05.29.(금) ○ 주 5일 근무(월～금) ○ 근로시간 : 09:00 ～ 18:00 * 임원비서업무 특성 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월 10시간 이내) ○ 4대보험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월 2,055,310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주근무지 상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성남수정새마을금고빌딩 6~8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Ⅳ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 전형일정

구분	일정	합격자 발표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9.12.13.(금)~2019.12.26.(목) 18:00	-	14일간
서류심사	2019.12.30.(월) 예정	발표 2020.1.2.(목)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면접시험	2020.1.6.(월) 예정 (면접 장소,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	발표 2020.1.8.(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임용등록	~2020.1.10.(금)	-	-
임용(예정)일	2020.1.13.(월) 예정	-	-

※ 임원비서 인력의 퇴사로 인한 채용의 긴급성 등 사정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채용공고 기간을 14일로 단축하여 시행

※ 상기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원서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주소(**2019.12.26.(목) 18:00 도착분까지 접수**): recruit@ikosea.or.kr

※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 성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 2019.12.26.(목) 18시 이후에 도착할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는 내부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 심사방법 : 응시원서 기반 심사

* **교육·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 심사**

* 서류전형 만점의 60%미만 득점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2차 면접시험 : 직무설명자료 참고(면접방법은 인터뷰 형식)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전형 만점의 70%미만 득점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Ⅵ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임원비서)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관련 증빙 1부(우대사항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인쇄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면접일 현장 제출)

구분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임원비서)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경력기입자에 한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기입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1부(교육사항 기입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1부(자격증 기입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가점 기재자에 한함)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제한채용 지원자는 필수, 일반 부문 지원자는 가점 기재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 사항 증빙 서류 각1부(해당자에 한함) < 고졸 가점 기재자 추가 제출 서류 >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공공기관 취업지원용) 1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증명서 발급 ※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경력 단절 여성 가점 기재자 추가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자녀 존재 여부 확인용)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용)

※ 응시원서 상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합격을 취소함

Ⅶ 기타 유의사항

□ 당초 근로계약한 근무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 면접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임용 대상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동일한 전형 방식을 적용하여 채용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는 내부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 기재 오류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공지합니다.

□ 우리 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취소 및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신 종이 서류(전자우편을 통한 제출서류 제외)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받고 있으니, 면접전형 결과발표일 이후 90일 이내에 전자메일(recruit@ikosea.or.kr)로 반환청구서[별첨3]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자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보관 후 폐기 예정

□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팀(031-697-78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직무설명자료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기간제근로자(임원비서)】

<table>
<tr><td rowspan="4">채용분야</td><td rowspan="4">기간제근로자
(임원비서)</td><td rowspan="4">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02.경영·회계·사무</td></tr>
<tr><td>중분류</td><td>02.총무인사</td></tr>
<tr><td>소분류</td><td>03.일반사무</td></tr>
<tr><td>세분류</td><td>01.비서</td></tr>
<tr><td>능력단위</td><td colspan="4">○ (비서) 01.경영진 지원업무, 03.경영진 일정관리, 04.출장관리, 05.응대업무, 06.보고업무, 08.회의의전관리, 09.비서 사무정보관리</td></tr>
<tr><td>직무수행내용</td><td colspan="4">○ (비서) 임원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사무환경 정비 및 일상적 업무를 지원, 임원의 인적·물적·자원·시간의 효율적 활용 지원, 출장업무 지원, 전화 또는 방문객을 상황에 따라 선별·대응 지원, 임원지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하달 지원,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정보 검색·수집·활용 등</td></tr>
<tr><td>전형방법</td><td colspan="4">○ 서류심사 → 직무능력면접 → 선발</td></tr>
<tr><td rowspan="2">일반요건</td><td>연령</td><td colspan="3">무 관</td></tr>
<tr><td>성별</td><td colspan="3">무 관</td></tr>
<tr><td rowspan="2">교육요건</td><td>학력</td><td colspan="3">무 관</td></tr>
<tr><td>전공</td><td colspan="3">무 관</td></tr>
<tr><td>필요지식</td><td colspan="4">○ 지시내용 전달요령, 상황별 내방객 응대원칙
○ 전화응대걸기 예절
○ 조직 및 관계부서에 대한 정보 파악, 직장예절 규범</td></tr>
<tr><td>필요기술</td><td colspan="4">○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관리 능력
○ 관련 법률 및 내부 제규정에 대한 지식
○ MS office, 한컴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력
○ 격식에 맞는 예의바른 태도</td></tr>
<tr><td>직무수행태도</td><td colspan="4">○ 윤리의식 및 보안준수
○ 업무수행에 충실하려는 성실성
○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
○ 합리적인 해석 및 분석 자세
○ 인문학적 이해와 소양</td></tr>
<tr><td>직업기초능력</td><td colspan="4">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td></tr>
<tr><td>참고사이트</td><td colspan="4">www.ncs.go.kr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 검색</td></tr>
</table>

[별첨2] 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 기준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 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u>않는</u>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별첨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4] 임용시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8.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